

중국 정부의 최초 기업결합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 <기업결합 반독점 컴플라이언스 지침>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2023년 9월 11일 <기업결합 반독점 컴플라이언스 지침> (이하 “지침”)을 공표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기업결합 관련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을 공표한 것입니다.

<지침>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서 기업에 대한 강제성은 없습니다(제24조 제1항). 그러나 SAMR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업결합 컴플라이언스를 실행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불법 기업결합 행위에 대해 조사 및 처벌을 할 때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제도의 구축 및 실행 상황을 고려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제32조). 즉, 불법 기업결합 행위가 있어 처벌을 하더라도 기업 내에 기업결합 관련 컴플라이언스 제도가 구축돼 있다면 이를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기업이 적법한 신고 없이 결합행위를 하는 경우 최고 전년도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기업들은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내용을 기업 내부 컴플라이언스 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지침>은 중국 기업결합심사 제도를 체계적으로 망라하여 정리하였으므로, 당해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침>의 내용을 명확하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I. <지침>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및 근거
	제2조 컴플라이언스 필요성
	제3조 적용범위
제2장 기업결합 심사 관련 주요 규정	제4조 기업결합
	제5조 기업결합 신고
	제6조 신고 의무자
	제7조 기업결합 심사
	제8조 불법으로 실시한 기업결합에 대한 조사
	제9조 법률 리스크 및 책임

<p>제3장 중점적인 컴플라이언스 리스크</p>	제10조 중점적으로 주목해야 할 기업결합 유형
	제11조 신고 여부 판단 시 중점적으로 주목할 사항(사례 예시)
	제12조 신고 시점 판단 시 중점적으로 주목할 사항(사례 예시)
	제13조 신고 후 “gun jumping”(사례 예시)
	제14조 신고 대리인에 대한 요구
	제15조 신고자료에 대한 요구
	제16조 경쟁 배제/제한 리스크
	제17조 심사규정 위반(사례 예시)
	제18조 기업결합의 심사 및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제19조 해외 기업결합의 반독점 리스크
<p>제4장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p>	제20조 컴플라이언스 관리제도
	제21조 컴플라이언스 관리직책
	제22조 컴플라이언스 반독점 준법책임자
	제23조 핵심 보직 인원
	제24조 리스크 식별 및 평가
	제25조 리스크 대응
<p>제5장 컴플라이언스 보장</p>	제26조 컴플라이언스 확약
	제27조 컴플라이언스 보고
	제28조 컴플라이언스 평가
	제29조 컴플라이언스 자문
	제30조 컴플라이언스 교육
	제31조 컴플라이언스 상벌
	제32조 컴플라이언스 격려
	제33조 협회의 역할 발휘
<p>제6장 부칙</p>	제34조 지침의 효력
	제35조 지침에 대한 해석

<지침>은 위와 같이 총 6장, 3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침>은 제1장의 총칙과 제6장의 부칙 외에 4가지 부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2장 “기업결합 심사 관련 주요 규정” 부분에서는 중국 <반독점법>과 <기업결합 심사 규정>의 가장 중요한 조항들을 열거하였고, 제3장 “중점적인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부분에서는 기업이 기업결합 관련 업무를 진행할 때 놓치기 쉽거나 오해하기 쉬운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일부 조항에서는 사례를 예시로 설명하였으며, 제4장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와 제5장 “컴플라이언스 보장” 부분에서는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관리제도를 구축 및 실행하는 과정 중 참고할만한 사항들을 제시하였습니다.

II. <지침> 관련 시사점

<지침>의 제2장 “기업결합 심사 관련 주요 규정” 부분과 제3장 “중점적인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부분에서는 주로 기존 관련 법규에 있는 내용을 정리 및 설명하였으며, 이 중 기업에 시사점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음으로 미신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신고의무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

<지침> 제6조 제3항에서는 처음으로 불법 기업결합(법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결합)을 진행한 경우, 신고의무자가 상응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기업결합 심사 규정> 제13조에서는 기업결합 행위가 있을 경우 어느 주체가 신고의무자인지를 명시했고, 다른 사업자들은 협조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신고의무를 위반한 결합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했는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이 조항에 대해 실무상 법적 책임은 당연히 신고의무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에 특별히 이견이 없기는 하였으나, <지침>에서 이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2) 지분비율이 낮은 소수 주주도 지배권을 취득하여 신고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

<기업결합심사규정> 제5조에서는 지분비율이 지배권 취득 여부의 유일한 판단기준이 아니라 주주회 또는 이사회 의결 메커니즘, 임원 임명 및 파면 권리, 주주와 대상회사의 중대한 상업적 관계나 협력계약 존재 여부 등도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침> 제11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례를 통해 예시하는 방식으로 상기 규정의 취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지배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업결합에 해당될 수 있다. A기업이 B기업의 20%의 지분을 인수할 경우, 비록 A기업은 최대주주가 아니지만, A기업이 단독으로 B기업의 연도상업계획, 재무 예산, 고급관리인원 임명 및 파면 등 경영관리사항을 부결할 수 있을 경우, A기업은 B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업결합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당해 기업결합이 신고기준에 달했으나, A기업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법에 따라 기업결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즉, 상기 사례와 같이 지분양수도 거래 이후 양수인의 지분비율이 최대주주인 기존 주주보다 많이 낮더라도, 양수인이 대상회사의 연도계획, 재무 사항, 주요 경영진에 선임/파면 등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veto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지배권을 취득(즉, 최대주주와 공동지배를 형성)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소수 지분권자인 양수인이 기업결합신고 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권대식

변호사

T 86.10.6461.3650

E daeshik.kwon@bkl.co.kr

김경남

외국변호사(중국)

T 86.10.6461.3653

E jingnan.jin@bkl.co.kr